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

[시행 2019. 12. 20.] [관세청고시 제2019-73호, 2019. 12. 20., 일부개정]

관세청(관세국경감시과), 042-481-7901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관세법」제164조 및 제16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운영인 등"이라함은 「관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말한다.
- 2. "보세사 채용"이란 운영인이 직접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과 운영인이 화물관리업무를 분사시킨 후 해당 분사회사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분사회사는 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3. "세관장"이라 함은 당해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.
- **제3조(지정요건)**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운영인 등의 법규수행능력이 우수하여 보세구역 자율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
 - 1.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
 - 가.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 채용
 - 나. 화물의 반출입, 재고관리 등 실시간 물품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(WMS, ERP 등) 구비
 - 2.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
 - 가. 1호 가목 및 나목 충족
 - 나. 「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」 제5조에 해당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
 - 다. 보세공장의 경우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」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할 것
- 제4조(지정신청 및 갱신) ①「관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 이라 한다)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"별지 제1호 서식(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」 "별지 제1-1호 서식")"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FAX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보세화물관리 및 세관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하여 법 제164조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하고, "별지 제2호 서식(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은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"별지 제1-2호 서식")"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 - ③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세관장에게 제1항의 지정신청 서식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특허보세구역 운영

에 관한 고시」제7조에 따라 특허의 갱신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허보세구역 설치·운영 특허(갱신) 신청서 하단의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란에 갱신 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. 이때,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심사기간은 특허보세구역 갱신 심사기간에 따른다.

-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, 전자메일, 전화, 휴대폰 문자전송 방법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.
- 1.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하여야 한다는 사실
- 2. 갱신절차

제5조(지정취소 사유 등) ① 법 제164조 제6항에서 "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.

- 1. 법 제178조 제1항에 해당된 때
- 2.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때
- 3.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보세사를 채용하지 않을 때
- 4. 제3조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5. 그 밖에 보세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 등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.
- **제6조(의견청취)**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운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운영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.

제7조(절차생략 등) ① 법 제164조제1항에서 "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- 1.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
 - 가. 「식품위생법」제10조,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6조,「의료기기법」제 20조 및「약사법」제56조,「화장품법」제10조 및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제9조·제18조·제25조·제 29조에 따른 표시작업(원산지표시 제외)과 벌크화물의 사일로(silo)적입을 위한 포장제거작업의 경우 법 제 158조에 따른 보수작업 신청(승인) 생략
 - 나. 「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」제16조에 따른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년 1회로 완화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다. 「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22조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상황의 점검생략
- 라. 「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」제17조에 따른 장치물품의 수입신고 전 확인신청(승인) 생략
- 2.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
 - 가. 제1호 각목의 사항
 - 나.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」제37조에 따른 특례 적용
 - 다.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」제7조 제2항에 따른 보관창고 증설을 단일보세공장 소재지 관할구역내의 장소에도 허용
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생략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에 명기하고, 보세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절차생략 등의 정지)**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절차생략 등을 정지할 수 있다.
 - 1.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- 2. 운영인 등이 제11조에 따른 경고처분을 1년에 3회이상 받은 경우
 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절차생략 등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.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세사를 채용할 때까지
 - 2.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
 -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절차생략 등을 정지하는 기간 동안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위탁되거나 생략된 업무는 세관공무원이 직접 관리한다.
- 제9조(운영인 등의 의무) ① 운영인 등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운영인 등은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화물관리 등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가 이탈시 보세사 업무를수행할 수 있다.
 - 2. 운영인 등은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는 보세사를 상주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보세사를 채용, 해고 또는 교체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 - 3.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.
 - 4. 운영인 등은 절차생략 등에 따른 물품 반출입 상황 등을 보세사로 하여금 기록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.
 - 5. 운영인 등은 해당 보세구역 반출입 물품과 관련한 생산, 판매, 수입 및 수출 등에 관한 세관공무원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 확인 시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인이 책임진다.
- 제10조(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감독) ①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인이 자율점검표를 「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」제20조에 의한 보세구역 운영상황 및「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」제16조에 의한 재고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, 자율점검표를 다음 해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- 1.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- 2.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생략 준수 여부
- 3. 운영인 등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
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해당 년도 정기감사에 갈음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, 자율점검표 미제출·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.
- ③ 세관장은 영 제184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법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(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)하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「행정조사기본법」제11조, 제17조, 제18조,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,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1. 「행정조사기본법」제3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사항
- 2.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제11조(행정제재) ① 세관장은 운영인 등과 보세사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사에게 경고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관계서류의 보존) 운영인 등은 영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 된 화물에 대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규제의 재검토) 관세청장은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(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19-73호,2019.12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